

에 임원으로 보선 및 증원된 경우는 재임 횟수를 추가 산정하지 않는다.

<신설 2021. 3. 12.>

- ④ 제2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회의 임원은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 제18조, 제20조에 따라 임원의 연임 횟수 제한의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. <개정 2021. 3. 12.>

제26조(임원의 결격사유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본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. <개정 2024. 3. 13.>

1.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(회장으로 한정한다)
2. 「국가공무원법」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<개정 2021. 3. 12.>
3.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·도 및 시·군·구종목단체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<개정 2021. 3. 12.>
4.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·도 및 시·군·구종목단체가 주최·주관하는 경기의 결과에 영향을 주는 승부조작에 가담하여 「형법」 제314조 및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47조 및 제48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<개정 2021. 3. 12.>

- 4의2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실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이 면제된 날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